청 양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선 람	기관의 장

제200호 2020. 4. 9.



회 람							

발행 청 양 군 (편집 기획감사실 ☎041-940-2051)

조 례

○ 제2447호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3

○ 제2448호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5

○ 제2449호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20

○ 제2450호 청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31

○ 제2451호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 35

○ 제2452호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37

○ 제2453호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40

규 칙

○ 제1255호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3

○ 제1256호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1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

2020년 4월 9일

청양군 조례 제2447호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청양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용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하“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지급 등) ①군수는 재난발생시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지급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

2020년　4월　9일

청양군 조례 제2448호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단

(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수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교통 또는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과장

2.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 시간, 이용 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2. 임산부

3.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일시적 장애인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

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

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 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

편이 없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 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와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농어촌버스 요금 이하
2.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군 관할구역을 운행할 경우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농어촌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경우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요금 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요금 기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 요

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군 관할지역과 충청남도 내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충청남도 외 운행지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철도차량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일부 기능을 분담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민간단체

④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군을 관할하는 충청남도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1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청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접수 번호			결재	접수자		결재권자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용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유형	교통약자 유형	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타( )			
	일상생활상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휠체어	전동	수동	없음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보호자	없음
생활형태	거주형태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	급여종류( )		해당무
	가족(동거인)수	명			보 조 인	있음		없음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청양군수(OO 이동지원센터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297㎜

신청서 작성 안내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 이동지원센터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약 서

본인은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
수　　신 : ○○○ 귀하(　○○동 ○○번지)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승인/불승인)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이용대상자와의 관계	
이용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장 애 유 형		□ 영구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일시적 장애 (　　)				
차 량 유 형		□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이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결 정 사 유						

년　　월　　일

청양군수(OO 이동지원센터장) (인)

210㎜×297㎜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20년 4월 9일

청양군 조례 제2449호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를 "옥상 간판 중 옥상 바닥으"로, "옥상구조물"을 "옥상 구조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를 "간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광고물등"을 "광고물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접수 처리

하는 때”를 “접수·처리하는 경우”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접수 처리”를 “접수·처리”로, “30일전”을 “30일 전”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을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고물등”을 “광고물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고물등”을 “광고물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15조제4호 나목”을 “영 제15조제4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23조”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0조에”를 “제10조에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7조에”를 “제17조에도”로, “너머”를 “넘어”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

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전단 중 “광고물등”을 각각 “광고물 등”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광고업자에 대해서는”을 “사람에게”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를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등 관련분야”를 “관련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심의안건”을 “심의 안건”으로, “발생일로”를 “발생일”로, “이내에”를 “이내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이 내에 한하여”를 “이내에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관계 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 관계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내지 5명”을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공인”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때”를 “경우”로, “관계서류”를 “관계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으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때”를 “경우”로,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제5항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의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를 “밖에”로,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25조제3호 중 “확보여부”를 “확보 여부”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사유 없”을 “사유없”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련규정”을 “관련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직·간접”을 “직접·간접”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중 “광고물등을”을 “광고물 등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광고물등”을 각각 “광고물 등”으로, 같은 항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광고물등”을 “광고물 등”으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때”를 “경우”로, “관리자등”을 “관리자 등”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월말”을 “10월 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3항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을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중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를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로,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5호 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2월말”을 “12월 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때”를 “경우”로,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발급”을 “보고”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별도”를 “따”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집행내역”을 “집행 명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에”를 “제7항의 규정에도”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광고물등”을 각각 “광고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않은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인허가”를 “인가·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를 “제1항에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광고물등”을 각각 “광고물 등”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수수료
1.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가. 입간판	
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12만원
- 0.5㎡ 이상 0.8㎡ 미만	17만원
- 0.8㎡ 이상 1㎡ 미만	25만원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35만원
- 1.3㎡ 이상 1.6㎡ 미만	42만원
- 1.6㎡ 이상 2㎡ 미만	58만원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67만원
- 2.3㎡ 이상 2.6㎡ 미만	92만원
- 2.6㎡ 이상 3.0㎡ 미만	117만원
라) 면적 3㎡	130만원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7만원
- 0.5㎡ 이상 0.8㎡ 미만	10만원
- 0.8㎡ 이상 1㎡ 미만	13만원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17만원
- 1.3㎡ 이상 1.6㎡ 미만	25만원
- 1.6㎡ 이상 2㎡ 미만	42만원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50만원
- 2.3㎡ 이상 2.6㎡ 미만	58만원
- 2.6㎡ 이상 3.0㎡ 미만	75만원
라) 면적 3㎡	80만원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수수료
나. 현수막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8만원
- 1㎡ 이상 2㎡ 미만	12만원
- 2㎡ 이상 3㎡ 미만	13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미만	17만원
- 3.8㎡ 이상 4.4㎡ 이하	22만원
- 4.5㎡ 이상 5.0㎡ 미만	25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33만원
- 6.1㎡ 이상 8.0㎡ 이하	50만원
- 8.1㎡ 이상 10.0㎡ 미만	58만원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2천원
- 21장 이상	장당 33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0천원
- 21장 이상	장당 37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3천원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0천원
- 21장 이상	장당 37천원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수수료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50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83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167만원
라. 1년 이상	333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

2020년　4월　9일

청양군 조례 제2450호

청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청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청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 경비

8.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청

양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청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팀장

제9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20년　4월　9일

청양군 조례 제2451호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 중 “않은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준”을 “기준(토지·건축물·수면 위)”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신청 부지면적이 2,000㎡ 이내인”을 “현재 청양군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이 부지면적 2,000㎡ 이내로 신청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시설 허가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전기 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시설은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20년 4월 9일

청양군 조례 제2452호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제10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선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

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20년　4월　9일

청양군 조례 제2453호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청양군”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청양군 귀농인의 집”내”를 “청양군 귀농인의 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 및”을 “사람 및”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청양군”을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촌사회현황”을 “농촌사회 현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운영관리”를 “운영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를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관한사항”을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인정 할”을 “인정할”로, “개최 할”을 “개최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원하는 데”를 “지원하는데”로, “설치 할”을 “설치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1인과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하여 2인 내외”를 “1명과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내”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운영관리”를 “운영 관리”로, “유지관리”를 “유지 관리”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읍면제외)”를 “(읍·면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군홈페이지”를 “군 홈페이지”로, “제출하여야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허가일로”를 “허가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 하여”를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시설사용료”를 “시설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로, “일시납, 월납, 분기납, 반기납”을 “반기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숙소사용료”를 “숙소 사용료”로 한다.

2. 입교자가 입교기간 중 관내 정착을 위하여 중도에 퇴소한 경우

제15조제1항 중 “제반”을 “모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보완 하여야”를 “보완해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교자 교육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입교자는 제14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20년 4월 9일

청양군 규칙 제1255호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 중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 중 “영 제39조”를 “영 제37조”로,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청양군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선정 통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청양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청양군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4조제1항과 관련)

○○○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일련번호	세목	연도기분	과세번호	납세자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세액	주소	반송사유

※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

■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4조제2항과 관련)

○○○ 송달부(교부)

과세번호 납세자명 출력순번 과세물건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납부세액	우편번호 연락처	주소	교부장소	수령인			수령일자	미교부사유
					성명	납세자와의 관계	서명		
누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4조제5항과 관련)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구분	세목	연도/기분	납세의무자		송달지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인수자
			성명	주소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210mm×297mm(백상지 80g/㎡)

■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4조제5항과 관련)

년도 기분 세(서류명 기재) 송달불능부

과세 번호	납세의무자 주소		1차송달		재송달			공시 송달 일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등기번호	반송일	송달지	반송사유	반송일	

210mm×297mm(백상지 80g/㎡)

■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5조제1항과 관련)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경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결재	담당자	팀장	분임징수관	징수관

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	연도/기분	당초		취소		경정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구·군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구·군세 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5조제1항과 관련)

지방세 부과취소 · 경정처분 내역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세액(본세)					취소· 경정사유
		성명	주소		세목	당초	취소	경정	비고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2020년　4월　9일

청양군 규칙 제1256호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제5조제2항에" 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제5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제3호 외의 부분)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6. <삭제>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